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사건 | 2024타경103712 부동산임의경매 | | | 매각 물건번호 | 1 | 작성 일자 | 2026. 2. 19. | 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 | 김태균 | 전자서명완료 |
|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| 별지 기재와 같음 | | | 최선순위 설정 | 목록 1, 3 : 2022. 4. 4. 근저당권 | | 배당요구종기 | 2024. 6. 21. | | |
|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| | | | | | | | | | |
| 점유자 성명 | 점유 부분 | 정보출처 구분 | 점유의 권원 | 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 | 보증금 | 차임 | 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 | 확정일자 | 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 | |
| 조사된 임차내역없음 | | | | | | | | | | |
| <비고> | | | | | | | | | | |
| 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 | | |
|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| | | | | | | | | | |
|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| | | | | | | | | | |
| 비고란 | | | | | | | | | | |
| ① 일괄매각. ② 목록 3 제시외 울타리 약(100㎡)만 포함. 나머지 제시외 건물은 제외. ③ 공부상 목록 1 '대지', 목록 2 '전' 이나 공히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나지임. ④ 목록 1, 3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경량철골구조 또는 컨테이너박스로서 용도 및 구조 등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별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만을 정상 평가함. | | | | | | | | | | |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103712

[물건 1]

1.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278-4
대 195㎡

3.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학리 278-8
전 336㎡

제시외 3-2 울타리 철제 약(100M)㎡

| 감정평가액 | | 2,028,410,000 |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회차 | 기 일 | 최저매각가격 | 매수신청보증금 |
| 1회 | 2026.03.30 | 695,745,000 | 69,574,500 |
| 2회 | 2026.05.04 | 487,022,000 | 48,702,200 |
| 3회 | 2026.06.15 | 340,915,000 | 34,091,500 |
| 4회 | 2026.07.20 | 238,641,000 | 23,864,100 |

- ① 일괄매각.
- ② 목록 3 제시외 울타리 약(100㎡)만 포함. 나머지 제시외 건물은 제외.
- ③ 공부상 목록 1 '대지', 목록 2 '전' 이나 공히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나지임.
- ④ 목록 1, 3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경량 철골구조 또는 컨테이너박스로서 용도 및 구조 등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별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만을 정상 평가함.